

1. 개정이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2조 등)

시·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신설함
나. 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등)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함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폐지(안 별표 8 및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기준에서 선임상담원 기준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를 제외한다) 종사자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중 “상담원(선임상담원을 포함한다)”을 “상담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별표 10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팀장 1명, 팀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

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지원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5의3호에 따른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지원 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 취득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나.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14 제1호의 지역아동센터란 다음에 협동돌봄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동돌봄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							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	----	--	--	--	--	--	--	--	----	--	--	--	--	--	--	--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별표 8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생활복지사로 재직 중인 자는 제52조의2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5의2]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의2 관련)

1. 협동돌봄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협동돌봄센터의 생활복지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 (생 략)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신 설>	②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아동 보호전문기관 중에서 고난도 사 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 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 종·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4 와 같고, <u>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 자격기준</u> 은 별표 15와 같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 치기준 등) ----- ----- ----- ----- <u>아동복지시설(협동돌 봄센터를 제외한다) 종사자의 자격기준</u> -----.
<신 설>	<u>제52조의2(협동돌봄센터 종사자 의 자격기준)</u> 법 제52조제1항제 9호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종사 자의 자격 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